성주군 관리계획 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결정목적

○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을 매립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부직포를 소각함으로써 농민부담 감소를 위해 생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 이를 위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2. 결정내용

○ **내 용 :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

· 군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 4,504㎡

3. 결정사유

· 본 사업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의 지구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변경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매립시설의 사용기간 연장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		증) 4,504	4,504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 - 면적 : 4,504㎡ 증) 4,504	▪ 본 사업지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삼산리 50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변경함으로써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안정적 및 위생적 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질 향상과 매립지 확보난 해소를 위해 본계획을 수립하였음.